

## 1 제1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 결과 보고

### 가. 개요

- 주 제: 공적연금 회계의 국가별 현황 및 쟁점: 한국, 스위스, 프랑스, 일본을 중심으로
- 일 시: 2020.11.3.(화) 14:00~16:30
- 장 소: 서울 더 플라자 호텔, 4층 오크룸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반 참가자 및 해외 발표자는 웹심포지엄으로 실시간 동시 진행

#### 〈주제발표 및 토론〉

##### [기조발표]

- OECD 국가의 공무원 연금회계처리 다양성(김완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 [국가별 발표]

- 스위스의 공적연금 회계(Andreas Bergmann 스위스 취리히응용과학대학 교수)
- 프랑스의 공적연금 회계(Fabienne Colignon 프랑스 국가회계기준위원회 시니어 프로젝트 매니저)
- 일본의 공적연금 회계(Ryota Kaneko 일본 국학원대학 교수)
- 한국의 공적연금 회계(김봉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좌담회]

- 유용한 연금회계정보 산출을 위한 논의
  - 좌장: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
  - 패널: Ross Smith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국장, 백승무 공무원연금공단 차장, 국가별 발표자 4명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11월 3일(화)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공적연금 회계의 국가별 현황 및 쟁점: 한국, 스위스, 프랑스, 일본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제1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심포지엄은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으며, 관계부처, 국회, 학계, 유관기관, 회계전문가 등 국내 인사는 물론 IPSASB, OECD 관계자, 필리핀 감사원 등 해외 인사 총 102명이 참여하였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의 개회사와 이호동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국장의 축사로 개회하였으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스위스 취리히응용과학대학 간의 업무협약 체결식(MOU)이 온라인으로 체결되었다. 이어 기조발표와 프랑스, 스위스, 일본, 한국의 국가별 발표, 좌담회로 진행되었다.



〈환영사 및 축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스위스 취리히응용과학대학 업무협약체결식〉

기조 발표에서는 김완희 센터 소장이 OECD 국가의 공적연금 회계처리의 다양성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재무제표 본문표시, 주식표시, 미인식 국가들을 소개하고, 발표사례로 선정된 4개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국가별 발표는 스위스 취리히응용과학대학 Andreas Bergmann 교수, 프랑스 국가회계기준위원회 Fabienne Colignon 시니어 프로젝트 매니저, 일본 국학원대학 Ryota Kaneko 교수, 그리고 한국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봉환 교수가 각국의 연금제도 및 회계처리 현황에 대해 발표하였다.

좌담회는 중앙대 교수이자 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위원회(IPSASB) 위원인 정도진 교수의 진행으로 Ross Smith IPSASB 국장, 백승무 공무원연금공단 차장, 발표자 전원이 참여하였다. 좌담회를 통해 유용한 연금회계정보란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고 국제적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정보라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추가적으로 하이브리드 연금제도와 공적연금에서의 할인율 이슈, 교환 및 비교환 거래가 섞여 있는 연금제도의 부채 인식에 대한 문제 제기 등 새로운 연구과제도 제안되었다.

센터는 공공재정관리 및 공공회계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관련 연구 결과를 논의하고 확산하기 위해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을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웹심포지엄 영상은 다음에 제시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Youtube 채널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개막식: <https://www.youtube.com/watch?v=4ld7FvCBZqA>
- 기조발표: <https://www.youtube.com/watch?v=Qz-rsV6vudo>
- 국가별 발표: <https://www.youtube.com/watch?v=xAcPuz0zZI8>
- 좌담회: <https://www.youtube.com/watch?v=tVyq9YfjfG8>

## 나. 발표 및 토론 결과 요약

### [기조발표] OECD 국가의 공무원 연금회계처리 다양성

#### Diversity of Public Officials Pension Accounting among OECD Countries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김완희 소장은 연금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국가와 미인식하는 국가 등 OECD 국가의 다양한 공적연금 회계처리를 소개함

- 한국 공적연금 현황은 공무원·군인연금만 연금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2019 회계연도 기준 공무원 758.4조원, 군인 185.8조원으로 총 944.2조원에 해당
- OECD 국가 중 연금충당부채 재무제표 인식 국가는 미국, 영국, 스위스 캐나다 등 13개국으로, 이들 국가는 IPSAS 또는 IFRS의 종업원급여와 유사한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음
  - 연금충당부채 규모는 총부채 대비 40%를 넘는 국가는 한국, 아이슬란드, 영국 등이며, GDP 대비로는 영국, 이스라엘, 한국, 미국 순으로 큼
- OECD 국가 중 연금충당부채 재무제표 미인식 국가는 프랑스, 일본, 스페인 등 15개국으로 연금충당부채를 미산출하며, 프랑스는 연금정보를 주석 공시, 일본은 연금적립금을 부채로 인식하는 등 다양성이 두드러짐
- 연금회계처리 다양성을 대표하는 4개국의 사례 선정 및 발표
  - 재무제표 인식 국가: 한국, 스위스
  - 재무제표 미인식 & 주석 공시 국가: 프랑스
  - 재무제표 미인식 국가: 일본



〈기조발표〉

[국가별 발표①] 스위스의 공적연금 회계

Accounting for Pensions in the Public Sector in Switzerland

□ 스위스는 공적연금을 종업원급여와 사회보장제도로 분리 운영하고 있으며, 연금의 성격별로 상이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음  
(발표자: Andreas Bergmann)

- 스위스 연금제도의 개요
  - 스위스 공적연금제도는 1층 노령 및 유족보험, 2층 직업적 혜택제도, 3층 개인 연금의 세 개 층으로 구분
  - 1층은 전 국민이 가입하는 기본 연금, 2층은 공공부문 혹은 민간부문에 관계 없이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종업원 대상, 3층은 세제혜택을 위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이 가능
- 스위스 연금제도의 회계처리
  - (1층) 향후 IPSAS 42(사회보장급여) 적용  
2020년까지 현금주의로 작성, 2021년부터는 발생주의로 전환하고, 기타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채로 인식하며 금융상품 기준에 따라 금융자산을 평가
  - (2층) 고용주체에 따라 상이한 회계기준 적용  
이 중 연방정부는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위험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IPSAS 39(종업원급여)에 따라 부채를 인식

〈스위스 연금제도의 개요〉

		스위스 공적연금 제도		민간연금
		1층 기초연금보험	2층 직업해택제도	3층 개별보험제도
타-부	일반	의무 제1조 노령 및 유족연금에 대한 연방법 (831.10)  노령 및 유족연금	의무 (필수) 제2조 퇴직, 유족 및 장애연금에 대한 연방법 (831.40)  스위스연방연금기금	자발적 제82조 퇴직, 유족 및 장애연금에 대한 연방법 (831.40)  금융부문(은행 및 보험회사) 내 다른 기관
	사무	의무 제1조 노령 및 유족연금에 대한 연방법 (831.10)  노령 및 유족연금	의무 (필수) 제2조 퇴직, 유족 및 장애연금에 대한 연방법 (831.40)  공적 및 사적 보험기관	
	민간	의무 제1조 노령 및 유족연금에 대한 연방법 (831.10)  노령 및 유족연금	의무 (필수) 제2조 퇴직, 유족 및 장애연금에 대한 연방법 (831.40)  보험기관	

출처: ZHAW, 「Research note on the Swiss public pension system and its treatment in public sector accounting」, 2019.

[국가별 발표②] 프랑스의 공적연금 회계

Accounting for Pensions in the Public Sector in France

□ 프랑스는 공무원연금제도의 경우에도 사회보장제도의 ‘재배분 메커니즘(répartition mechanism)’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으로 보아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있음 (발표자: Fabienne Colignon)

- 프랑스 연금제도의 개요
  - 프랑스 공적연금제도는 연금개혁법에 따라 ‘재배분 메커니즘(répartition mechanism)’을 선택하였음을 분명히 명시

- 중앙정부는 공무원과 국가회계실체가 고용계약이 아닌 법에 명시된 관계에 기반하며, 민간부문과 달리 ‘재배분 메커니즘(répartition mechanism)’에 따라 기여금을 납부 및 운영

\* 재배분 메커니즘(répartition mechanism)이란 부과방식 (pay as you go)과 같은 재무적 도구를 이용하여 세대 간 연대정책을 운영하는 메커니즘을 의미함

• 프랑스 연금제도의 회계처리

- 사회보장 하위 예산을 중앙정부 예산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정치적 관점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연방정부 재무제표 작성 범위에서 제외
- 즉, 연금제도는 권리·의무를 공유하는 법적 실체를 통해 운영되며, 재배분 메커니즘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이후의 연금지급은 현재의무가 아니므로 부채 미인식

• 프랑스 연금제도의 쟁점

- 프랑스는 연금제도가 불평등하다는 국민적 인식이 강해 이러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보편적 제도 채택을 위한 법 제정 중

〈프랑스 연금제도의 개요〉

제도의 유형	6유형의 공무원연금 운영 관리자						제도의 유형		
	관리직보충연금제도총연합회(250억 €)			공무원부기연금 (3억 €)			보충 제도		
보충적 제도	독립적 보충적 제도	보조적 연금 제도 (7억 €)	비관리직보충연금제도연합회(510억 €)	국가 및 지방계약 공무원 보충연금 기금 (30억 €)	국가공무원과 군인을 위한 연금기금 (520억 €)	지방공무원 연금기금 (180억 €)	국가산업시설 노동자 연금기금 (20억 €)	그 외 특수한 제도 철도청 퇴직 예비금, 파리 교통공사 직원 연금기금, 등 (150억 €)	완성된 제도
기초제도	지역일자 노령보험 전국공단, 자유직업 노령보험 국가기금, 프랑스 변호사 기금 등 (90억 €)	농업 사회공제 경명인 (80억 €)	농업 사회공제 노동자 (60억 €)	국가노후보험기금 (일반제도) (1.130억 €)	행정 및 군 공무원	지방공무원 의료공무원 관계자	국가 노동자	특수한 제도의 직원	피보험자
피보험자	비농업 노동자 및 자유업종 종사자	농업 경영인	농업 임금 노동자	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행정 및 군 공무원	지방공무원 의료공무원 관계자	국가 노동자	특수한 제도의 직원
고용주	민간기업	민간기업	민간기업	민간부문: 상업, 산업, BTP, 용역	공법상 계약	중앙정부	공공기관	중앙정부	프랑스 철도노조, 파리 교통공사 등

출처: 프랑스 정부, 「Report on Retirement Pensions of the Public Service」, 2020.

### [국가별 발표③] 일본의 공적연금 회계

#### Accounting for Pensions in the Public Sector in Japan

□ 일본은 2004년 연금개혁을 통해 공무원연금이 후생연금으로 통합되었으며, 연금적립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적연금예치금(부채)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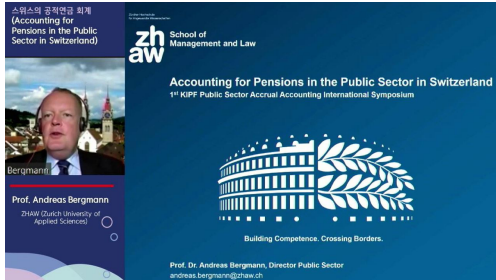
(발표자: Ryota Kaneko)

- 일본 연금제도의 개요
  -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후생연금의 두 개 층으로 구분
  - 과거에는 공무원만 가입하는 공무원연금이 따로 존재하였으나, 연금개혁을 통해 모든 근로자가 가입하는 후생연금으로 통합
  - 연금지급은 현 세대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현재의 수급자에 대한 연금급여로 충당하는 부과방식을 적용
- 일본 연금제도의 현황
  - 일본의 연금급여는 저출산, 인구고령화 등으로 연금급여가 고갈되고 있으나,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완전고용, 여성 근로자 수 증가, 높은 투자 수익률 달성 등으로 긍정적 요인도 존재
  - 2004년 연금개혁을 통해 거시경제슬라이드를 도입하여 연금급여 지급 수준 조절
- 일본 연금제도의 회계처리
  - 연금적립금 운용은 연금특별회계가 수행하고 있으며, 연금적립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적연금예치금으로 부채로 계상
- 일본 연금제도의 쟁점
  - 연금회계정보가 향후 연금개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 필요

[국가별 발표④] 한국의 공적연금 회계(공무원·군인연금충당부채 현황 및 개선과제)  
Current Status of Future Tasks of Public Officials Pension in Korea

□ 한국의 공무원·군인연금은 교환/비교환거래가 혼합된 연금제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비교환거래를 포함한 부채인식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발표함(발표자: 김봉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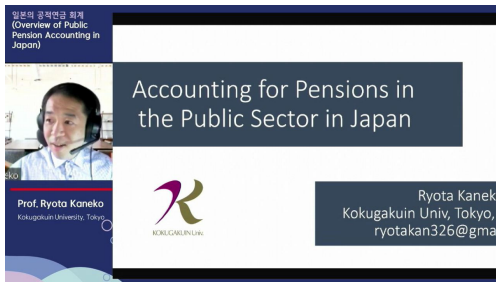
- 한국 연금제도의 개요
  - 한국 공적연금제도는 0층 저소득층 대상의 기초연금과, 1~2층 직업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 3층 개인연금의 네 개 층으로 구분
  - 특수직역연금에는 국가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도 포함하며, 매월 기준 소득의 9%를 기여금으로 납부
  -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재원 부족분에 대해 국가가 보전의무를 지고 있음
  - 2015년에는 기여율 인상, 지급률 인하 등 연금개혁을 통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 및 재정건전성 강화
- 한국 연금제도의 회계처리
  - 한국은 「연금 회계처리지침」상 공무원연금을 교환거래로 간주하여,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충당부채를 인식
  - 연금충당부채는 예측급여채무(PBO)를 기반으로 측정하며, 2019년 기준 944.2조원으로 재무제표상 부채의 절반을 차지
- 한국 연금제도의 쟁점
  -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연금충당부채를 통해 재정건전성 평가에 대한 우려
  - 비교환거래 성격도 포함하는 공적연금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
  - 지방공무원의 연금충당부채 인식으로 인한 작성 범위 불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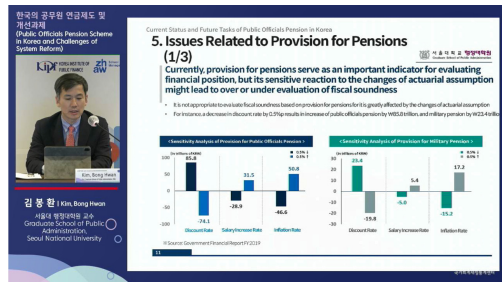
<스위스>



<프랑스>



<일본>



<한국>

**[좌담회] 유용한 연금회계정보 산출을 위한 논의**  
**Discussion on Producing Useful Pension Accounting Information**

□ (Fabienne Colignon 시니어 매니저) 공적연금이 사회보장 영역에서 미래지급 정보를 주식 공시 등을 통해 일관성 있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 프랑스는 연간 의결된 지출액과 해당 기관의 연금지급을 위한 기여금 수준을 파악하며, 권리·의무를 인식한다는 관점에 따라 중앙정부가 미래연금지급을 위한 현재의무를 책임지지 않음
- 현재 프랑스의 연금 관련 쟁점은 공적연금이 사회보장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미래지급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주식정보를 개선할 수 있는냐에 초점이 있음

(좌장) 회계정보에 있어 일관성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란 생각에 동의하며, 프랑스 사례를 통해 연금제도는 배경과 사회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함

□ (Andreas Bergmann 교수) 재무제표에 연금부채를 인식함으로써 국민에게 경제적 실질을 보여줄 수 있음을 논의

- 스위스가 연금 부채를 주식에서 재무제표로 변경한 이유는 바로 스위스의 모든 연금이 하이브리드 연금(위험공유)에 해당하기 때문임
- 다만, IPSAS 42는 부채인식 요건을 충족해야 계상이 가능하며, 연금제도들마다 다른 자격기준을 제공하고 있어 부채가 과소 또는 과대 계상될 우려가 있음

(좌장) 법 제정자가 연금제도 제정 시 회계에 대한 고민을 선 이행하지 않고 이루어져 연금종류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 (Ryota Kaneko 교수) 정책입안자가 발생주의 연금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념체계 신설, IPSAS(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의 도입 등의 제고 필요

- 일본은 2015년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가 후생연금으로 통합되었으며, 이러한 후생연금은 연금특별계정에 100% 공시
- 연금개혁을 통해 후생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은 이전보다 이해하기 쉬워졌으나, 후생연금 통합으로 회계기준이 바뀐 것은 아님
- 다만, 일본은 발생주의를 채택한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정책입안자들이 발생주의 기반 회계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있어 개념체계 등을 제고할 때라 생각함

(좌장) 정책입안자 등의 발생주의 기반 회계정보 활용은 정부회계 연구에 있어 영원한 숙제라 생각

□ (백승무 공무원연금공단 차장) 사회보장과 근로보상 성격을 모두 지닌 공적연금의 분리 및 구분 공시를 통해 유용한 연금회계정보 산출

- 한국 공무원연금제도는 사회보장적 성격과 근로 보상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므로, 유용한 연금회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환거래와 비교환거래 요소를 구분하여 반영하는 것이 필요

- 또한 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공적연금 재정방식에 관계없이 확정급여제도하에서 종업원급여의 성격을 갖는 연금에 대해서는 계리하도록 권고

(좌장) 연금충당부채를 반드시 부채로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과 함께 스위스, 프랑스 사례를 보듯이 한국도 더 좋은 재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

□ (Ross Smith IPSASB 국장) IPSAS에 따라 제공되는 연금정보가 회계기준의 독립성과 일반화된 연금정보가 제공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유용

- IPSASB는 IPSAS 39(종업원급여)를 통해 위험공유 및 하이브리드 연금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였다고 판단
- 다만, 국제기준을 참고하지 않고, 현지 상황에 따라 자국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국가의 경우 위험공유 및 혼합연금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있을 수 있음
- 현재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자산 수익률에 대한 연금 프로젝트가 있으며, 할인율에 관한 어려운 주제도 여전히 존재함
- 그럼에도 공공부문 연금 회계정보는 예산 및 통계보고 등 관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 재무보고 이상의 가치를 지님

(좌장) 국제회계기준 수용을 통해 회계기준의 독립성과 일반화를 이뤄 국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

□ (김봉환 교수) 교환거래와 비교환거래로 혼합된 공적연금을 분리하여 인식한다면 공적연금의 성격과 표시가 일치되는 재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한국 공적연금의 교환거래와 비교환거래를 분리해서 인식할 수 있다면 성격과 표시가 일치되는 재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다만, 교환거래와 비교환거래에 해당하는 연금을 어떤 방식으로 추정하여 분리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



〈좌담회〉

## 2 「2020년 한국정부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 결과 보고

### 가. 개요

- 일 시: 2020.12.5.(토) 14:20~16:00
- 장 소: 서울 여의도 전경련 2층, 사파이어홀
- 주 최: 한국정부회계학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세션 주제 발표 및 토론〉

- [좌장] 심재영(한국방송통신대학교)
- [발표1] 국가회계기준과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 차이 비교(한소영,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 [발표2] 국가회계 프로젝트: 재무보고 개선(진태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 [토론] 김봉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지현미(계명대학교)
- [발표3] 국가 장단기투자증권 공시 개선(남혜정, 동국대학교)
- [토론] 김상노(한길회계법인), 최연식(경희대학교)
- [발표4] 공익법인 회계현안 및 개선방안(박윤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 [토론] 박미희(용인송담대학교), 윤성만(서울과학기술대학교)